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7.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9일, 이수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20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사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2.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 2.18.) 상정, 축조심사

제424회 국회(임사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 4.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426회 국회(임사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6.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의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은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입법부인 국회의 권능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침탈하는 헌정 파괴행위를 자행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과 계엄법을 통해 계엄제도를 두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독재적 권력의 유지나 군부의 권력 찬탈 등을 위한 수단으로 오·남용되고 있어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 선포권에 대해 국회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계엄의 오·남용을 통제하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연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긴급방위사태에 대한 사전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미국·프랑스 등도 계엄 선포 시 의회의 동의 내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계엄의 자의적인 선포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거나 계엄의 기간 연장을 부결하는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하는 등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 함께 제출토록 하고, 계엄 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도 삭제하며,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법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